

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

대한근대5종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2026. 4. 27. 임시이사회 개정(국가대표 선발 규정과 분리)

제1조(위원회 설치)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2.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
3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약간 명
3.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명, 지도자 1명, 팀 관계자 1명, 시도종목단체 임원 1명, 비경기인 1명, 여성 1명 외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.여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요건) ① 위원회 위원은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개 위원회 범위내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② 회장과 친족인자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)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근대5종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국가대표 지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본 연맹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인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50%를 초과하지 않게 동일대학 출신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⑥ 대한체육회 및 본 연맹 임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
-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, 본 연맹 장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⑧ 위원이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(선발)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(선발) 공고 계획 수립 전에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③ 연맹 정관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,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 안전에 대해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,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⑥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전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. 다만, 선수의 부상,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,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,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연맹 사무처에서 담당한다.

부 칙<1990년 4월 26일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199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6년 2월 18일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06. 2. 18)

부 칙<2013년 5월 21일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년 2월 13일>

제1조(경과조치) 본 연맹 산하단체인 전국규모연맹체는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 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, 제·개정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야 한다.(2013. 2. 13)
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6년 4월 27일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2026년 4월 27일부터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분리하여 시행한다.